

ISSUE & FOCUS

Newsletter 2016-12(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반도 안보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의미

지난 11월23일,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우리 측 국방장관과 일본 측 주한대사관에 서명이 되었다.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로써 2012년 6월, 체결 직전에 무산되었던 이래 여러 논란을 자아냈던 동 협정이 한일간 안보협력의 제도화된 장치로써 기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이란 체결국 상호가 군사비밀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통상 이 협정문에는 양국 간에 공유하는 군사정보의 분류등급, 이용절차, 군사정보의 보호, 군사정보 획득을 위한 상대국 방문 절차, 상대국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제3국에 제공하게 될 경우 필요한 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담게 된다. 이 협정은 보통 동맹 혹은 우방국가 상호 간에 체결되어, 공동의 위협 대상에 대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안보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게 된다.

한국은 2015년 말까지 미국 이외에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나토, 영국, 호주, 인도 등 24개국 이상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해 왔다. 구 공산권 국가였던 러시아와도 2001년에 동 협정을 체결하였고, 베트남과도 같은 협정을 체결해 왔다. 일본도 자위대의 활동이 글로벌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우방 국가들과 동 협정을 체결해 왔다. 특히 2012년 6월, 한국과의 협정이 무산된 이후에도 2013년 12월에 공표된 방위계획대강에서 북한 등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동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유하고 있고, 상호 동맹국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고 있는 ‘유사동맹’ 혹은 ‘간접동맹’의 관계에 있다. 때문에 이러한 관계에 있는 양국이 북한이라는 공통된 위협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세계에서는 상식적인 일이다. 게다가 일본은 독자적인 군사정찰위성을 4기 이상 운용하고 있고,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 및 해상초계기 전력, 그리고 레이더 시스템 및 음성정보 수집수단 등 방위성 정보본부 예하의 정보수집수단과 분석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도 우리와 대북 정보를 공유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동향, 그리고 잠수함 및 해군 함정 동향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는 채널이 열린 것은 한국의 안보위기대응능력을 높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2. 일본 안보역할 확대에 대한 객관적 이해

다만 일부 정치세력과 국민들 일각에서 이 협정이 역사문제에 대한 반성이 부족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빌미를 주게 되거나,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으로는 충분하게 한일 간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에 논란이 된 협정의 체결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 같은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당국자도 시인했듯이, 정부 차원에서의 대국민 설명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듯하다.

사실 일본이 2012년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소위 ‘보통국가론’의 국가전략논의를 바탕으로 자위대의 능력 증강을 도모하고,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제국주의 시대와 같은 군사대국화 혹은 군국주의 회귀의 성격을 가졌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생각한다. 일본 군국주의의 가장 큰 피해자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 미국이 여전히 미일동맹 체제 하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국가정책으로서 전쟁을 포기한 헌법 제9조 1항

의 구속력이 일본 국내적으로 여전히 강력하기 때문이다.

2013년 12월 공표된 『국가안보전략서』 및 『방위계획대강』과 같은 국가전략문서들에서 일본은 중국 및 북한발 군사위협을 가장 중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일동맹 강화는 물론, 한국, 호주, 아세안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필요성도 강조한 바 있다. 21세기 일본 외교안보정책을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면, 일본이 자신의 국가전략 기초를 무너뜨리고, 미일동맹의 기초를 벗어나, ‘정보보호협정’을 발판으로 한반도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는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현실, 특히 북한발 군사위협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를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비록 체결시점에 대한 논란이나 설명노력의 미흡함은 남지만,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를 우리의 안보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3. 북한 군사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 방안: 자주국방과 동맹강화

올해 9월까지 5차례 핵실험을 감행하고, 그 운반수단으로 장거리 미사일 및 SLBM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발 군사위협은 새로운 차원의 위협을 던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핵 및 미사일 전력을 관할하는 전략사령부의 위상을 기존의 육해공군과 맞먹는 지위로 격상시켰고, 유사시 핵전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한다는 전략도 공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북한발 군사위협에 대응하여 우리도 자주국방 차원의 군사력 증강 노력과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억제태세 강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핵무장 논의도 제기하고 있으나, NPT 회원국이고, 한미원자력협정 체결 당사자인 한국으로서 선뜻 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것은 기존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 해군의 잠수함 전단, 공군의 F15K나 새로 도입될 F35같은 첨단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가칭 전략타격사령부를 합참 예하에 결성하여, 대북 ‘공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력을 경우에 따라 공세적으로 운용하여 위협 징후가 있을 시에는 선제타격도 불사하고, 상대의 전략적 중추를 마비한다는 태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자주국방 태세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무기체계 소요제기와 생산을 담당해온 방사청과 ADD의 사업우선순위 등을 대폭 재조정하여 재래식 전략타격무기의 생산과 개발에 전력증강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자주국방정책을 국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로서는 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헌법상 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제도도 재정비해야 한다.

자주국방태세 강화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한미동맹 강화나 주변 우방국과의 안보협

력 강화로 풀어나가야 한다. 대북 핵억제를 위해 미국이 제공하도록 된 확장억제 및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같은 입장에 놓여있는 일본과의 공동 협력이 요청된다. 북한에 대한 압력수단을 갖고 있는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도 방치해선 안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한중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청해야 한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한반도 안보를 위해 긴밀하게 유지해야 한다. 지금은 경색된 남북 간 대화 채널도 복구하여, 북한 발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는 장치로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새로운 차원으로 전개되는 북한발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자주국방 차원, 한미동맹 차원, 주변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차원, 그리고 남북관계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은 그러한 포괄적 안보정책의 전개를 위한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